

코로나19 대응 R&D 지침

<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>

☞ 「코로나19 대응 R&D 지침(2.27)」, 「R&D 프로세스 온라인 플랫폼 안내(3.11)」에 이어,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(3.30)의 후속조치로 추가 지원방안 마련

1 배경

-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초기 연구공백 및 지연 문제에서 연구계획 이행 곤란, 연구목표 미달성 우려로 이어져 추가 대책 필요

2 연구현장 주요 애로사항

-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연구비 집행의 어려움, 연구활동의 지연 등이 ①연구목표 달성 곤란, ②연구비 집행 저조, ③ 규정 위반 가능성 등으로 이어지고,
 - 위기상황의 안정화 시기가 불확실하여, 연구현장의 불안 가중 및 연구관리자의 소극적인 대처 우려

[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 애로사항 사례]

- (연구활동) 개학, 임용 등 연기에 따른 연구인력 확보 곤란, 단계·종료 평가를 앞두고 성과 미달성 우려, 연구집단 내 교육의 질 하락 등
- (연구계획) 국제협력, 사업화 활동 위축, 임상실험대학 확보 곤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한 연구활동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
- (연구비 사용) 연구비 집행 저조,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 소극 집행*, 직접비 집행률 저조하여 간접비 및 연구수당 회수 우려** 등
 - * 연구실 예방경비는 간접비에서 집행('20.2월, 연구재단 지침)
 - ** ①직접비 집행비율이 50% 이하, 직접비 집행비율이 간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, ②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%p 이상 초과한 경우, 초과분 회수
- (연구장비·재료 구입) 국내외 연구장비 및 재료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연구비 집행 차질 및 연구활동 지연, 이로 인한 연구공백 우려 등
- (연구행정) 연구비 정산 곤란, 결과보고서 및 연차계획서 제출 지연, 장비도입 지연에 따라 장비도입 기한(과제 종료 2개월 전) 위반 우려 등

3

코로나19 위기극복, 연구현장 추가 지원방안

①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

- (연구비 이월 허용) 위기상황 종료 후 차년도까지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원칙적 허용
- (장비 도입기한 연장) 불가피하게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, 장비 도입기한(종료 2개월 전)을 한시적으로 예외적 연장(연구기간 연장 병행)
 - ※ 필수 연구장비, 불가피한 장비 도입 지연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 연장 허용 (최대 연장허용 기간 :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기간)
- (간접비 회수 보류) 직접비 집행률의 저조에 따른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으로 예외적 보류, 차년도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회수 재검토
 - ※ 단, 다년도 연구과제 중 해당 연구기간이 마지막 연구기간이 아닌 경우,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이 저조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유예 허용

②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지원

- (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) ① 단순 지연*시 연구기간 연장 허용, ②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울 경우** 연구계획 변경 또는 종료 검토
 - * 연구장비·재료 수급, 협력기관 운영차질 등 위기상황 안정화에 따라 해결 가능
 - ** 해외기관 방문, 인력 파견, 국외 교육 등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
 - 특히, 종료·단계평가를 앞둔 경우, 연구기간을 적극 연장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
- (온라인 활용) 국내외 교육, 국제협력,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의 경우, 온라인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
 - ※ 국제협력 과제의 경우, 출장 취소 등에 따라 절감된 연구비를 활용하여 화상회의 시스템 등 비대면 협력환경 구축 허용(필요시 협약변경)
- (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)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연구실 운영비*(손세정제, 마스크 등) 집행 독려 및 정산 면제(직접비 5% 이내)
 - * 과기부 소관 처리규정 [별표2] 연구활동비 7.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

4

향후 계획

- 연구현장 이행 독려, 필요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(연구재단)

[별첨] '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R&D 지침'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1부.

‘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응 R&D 지침’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

< 한국연구재단 기획총괄팀 >

※ 본 가이드라인은 사례별 적용 방향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, 과기정통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안별로 적용 필요. 단, 사안에 따라 이와 달리 적용할 수 있음

1. 코로나19 대응 연구기간 연장

* 과제관리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별/부서별 기준을 정하여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결정

□ 적용대상

- (대상사업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

□ 종료/단계 등 사업별 일정을 고려한 기간 연장

- (20년도 종료과제) 연구기간 연장 후 최종평가 실시
 - ※ 단, 舊 이지바로시스템 운영기간이 '20.12.31 종료하므로,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산 대상과제는 최대 '20.9.말까지 연장 허용
- (20년도 단계종료과제) '20년 내에 단계평가 및 차기단계 연구 착수가 가능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구기간 연장
 - 단계 종료 시 연구비 이월은 불가하므로 연구기간 연장을 통해 대규모 연구비 반납 사태 방지하고,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
 - ※ 단, '20년 정부연구비 지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며, 舊 이지바로시스템을 통한 정산 대상과제는 최대 '20.9.말까지 연장 허용
 - 상대평가를 통해 일부 과제만 차기단계에 진입하는 사업의 경우, 과제별 평가 시기를 통일하기 위해 연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
- (20년도 신규/계속과제) '20년도 연차 연구기간을 연장
- (기타사항)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회계연도 불일치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하여 조치*

전('19.3-'22.3, 36개월 / 36억원)	후('19.3-'22.6, 39개월 / 36억원)
('19년) '19.3~'19.12 (9개월) / 9억원(12억원×9/12)	('19년) '19.3~'19.12 (9개월) / 9억원(12억원×9/12)
('20년) '20.1~'20.12 (12개월) / 12억원	('20년) '20.1~'21.3 (15개월) / 12억원 *연구비 증액없이 3개월 연장
('21년) '21.1~'21.12 (12개월) / 12억원	('21년) '21.4~'22.1 (10개월) / 10억원(12억원×10/12)
('22년) '22.1~'22.3 (3개월) / 3억원	('22년) '22.2~'22.6 (5개월) / 5억원

* 2018년도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참고

□ 참고. 2018년도 기재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

-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,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
- (신규과제)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(단,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)

< 과제형 R&D 편성 기준 >

상반기 협약과제	하반기 협약과제
9개월분 단, 단년도과제는 12개월분 반영	6개월분

- * 상·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신규과제의 경우 단년도 과제는 9개월분, 다년도 과제는 7개월분 반영
- (계속과제)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(다만, 그간의 조정으로 '18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)
- * 예) '17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연구과제

협약기간	⇒	예산반영
('17년) '17.6~'18.5		'17.6~'18.2 (9개월)
('18년) '18.6~'19.5		'18.3~'18.12 (10개월)
('19년) '19.6~'20.5		'19.1~'19.12 (12개월)
('20년) -		'20.1~'20.5 (5개월)

□ 연구기간 연장 시 코로나19 인정 범위(사유)

-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입국이 필수적 이나(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나) 출입국이 불가능하여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가 필수적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실험실 폐쇄, 실험자 모집불가 또는 연구진행에 필수적인 시약, 재료, 장비 등의 수급 및 연구 Data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- 그 외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계획 완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
- 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인정 범위(사유)를 달리 정할 수 있음

□ 연구기간 연장 승인 : 본부별 공통 기준 마련 후 사업 담당 부서별 승인여부 결정

2. 코로나19 대응 R&D사업 간접비 회수 유예

□ 적용대상

- **(대상사업)**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
- **(적용과제)** 2020년 지원 연구과제* 중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이 저조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유예 허용 가능

* 연구기간이 코로나19 심각단계 기간을 포함한 연구과제에 한하며, 다년도 연구과제 중 해당 연구기간이 마지막 연구기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

□ 추진절차

- **(1단계)** 연구기관이 간접비 회수 보류 공문 신청(연구기관→재단 사업부서)
※ (신청기한)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전까지(단, '20.4월 이전 종료과제 등은 탄력적으로 예외적용)
 - **(2단계)** 간접비 회수 보류 허용 여부 확정 및 결과 송부(재단 사업부서 → 연구기관 및 재단 정산팀)
※ (검토기한) 재단 사업부서는 연구기관의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(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)을 고려하여 검토
 - **(3단계)** 후속조치 이행
 - (연구기관) 간접비 회수보류 결정 결과에 따른 정산절차 진행
 - (재단 정산팀) 간접비 회수 보류 결정 대상과제의 시스템 반영*
- * 대상과제는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Ezcheck 메뉴에 결정 사항 반영

□ 연구기간 연장 시 코로나19 인정 범위(사유)

-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입국이 필수적이나(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나) 출입국이 불가능하여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가 필수적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실험실 폐쇄, 실험자 모집불가 또는 연구진행에 필수적인 시약, 재료, 장비 등의 수급 및 연구 Data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- 그 외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계획 완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
 - 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인정 범위(사유)를 달리 정할 수 있음

3. 코로나19 대응 연구장비 도입기한(과제종료 2개월 전) 유예

□ 적용대상

- **(대상사업)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사업
 - 단계 마지막 연차 연구기간이 코로나19 심각 단계기간을 포함한 연구과제 중 코로나19로 인해 필수 연구장비 도입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과제에 한 함
- **(필수연구장비)** 단계 마지막 연차 연구계획서 상 구매 계획이 수립된 장비

□ 추진절차

- **(1단계)** 신청과제는 당초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기간 연장신청*과 함께 연구장비 도입기한(과제종료 2개월 전) 유예 신청(연구기관→ 재단 사업부서)
 - * 연구기간 연장신청은 3쪽 내용 준용
- **(2단계)** 연구장비 도입기한 유예 및 연구기간 연장 허용 여부 확정 및 결과회신 (재단 사업부서 → 연구기관 및 재단 연구정산팀)

□ 연구기간 연장 시 코로나19 인정 범위(사유)

-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 또는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입국이 필수적 이나(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나) 출입국이 불가능하여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가 필수적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실험실 폐쇄, 실험자 모집불가 또는 연구진행에 필수적인 시약, 재료, 장비 등의 수급 및 연구 Data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
- 그 외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계획 완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
 - 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인정 범위(사유)를 달리 정할 수 있음